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 -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-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위반행위 중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른 것은?
 -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·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
 -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
 -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
 -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상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계획을 ()마다 수립하고 시·도지사(특별 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)에 들어갈 기간은?

① 매년	② 3년
③ 5년	④ 10년
- 「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」에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 - 미세먼지(PM-10) 예보기준 중 미세먼지농도가 100 $\mu\text{g}/\text{m}^3$ /일 이상일 때는 매우나쁨에 해당한다.
 - 미세먼지(PM-10)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발령한다.
 - 미세먼지(PM-10) 경보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발령한다.
 - 미세먼지(PM-10) 주의보는 발령 후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$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인 때 해제한다.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우수유출저감대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-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
 -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
 -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월별 설치에 관한 사항
 -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

- 재난 및 위기관리에 대한 계획과 근거법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 - 지진종합방재계획 -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
 - 긴급구조대응계획 - 「소방기본법」
 -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 - 풍수해저감종합계획 - 「자연재해대책법」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 활동 중 복구단계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관련법 제정	② 인명 구조
③ 이재민 수용시설 운영	④ 현장 지휘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상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 - 우수유출저감대책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- 시장·군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.
 -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시 유희지, 불모지 등을 이용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는다.
- 「재해구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기관이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-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·운영지원
 -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 대한 급식 제공
 - 구호세트의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·공급
 -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-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
 -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
 -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
 -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에서 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을 할 경우 시·도대책본부장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재해복구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-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
 -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
 -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
 -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

